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기존 자활기금의 제한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기금 운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용어 변경(안 제2조)
- 당초 : 금융기관, 생업자금, 공공근로 등
 - 변경 : 금융회사등, 사회복지기금, 자활근로 등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안 제3조, 제4조)
- 당초 : 기초생활보장기금
 - 변경 : 자활기금
-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조문 정비(안 제3조)
- 기금의 세입세출 외 처리 근거 법령 변경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기금 존속기간 신설 : 2021년 12월 31일

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4조)

- 용어변경 :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 용도추가 : 자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바. 중학생 무상 교육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5조)

- 당초 : 중·고등학생, 대학생
- 변경 : 고등학생, 대학생

사.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아.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 등 정비
(안 제11조 ~ 제13조)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및 구미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라 운용되고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사업용도에 따라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자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② 장학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운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

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6.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읍·면·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4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

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중에서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④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점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별 업무 담당

제13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으로 본다.

제4조(자활공동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는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생략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

- 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 ④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제9호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되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추가된 자활기금의 용도로 비용이 발생함. (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대여 등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비정기적이며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 (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주민복지과 고용복지T/F 김정은 (480-5042)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배 정 미
	담 당	안 진 희 박 연 길
	담 당 자	유 지 현 김 정 은 (480-5124, 5042)